



[기존주택매입방식]

2022년 지하층주택 매입 공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특별법에 의거 도심 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지하층주택 거주 임차인의 주거상향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매입임대사업용 주택을 매입합니다.

1 매입대상주택 요건

① (매입주택) 아래 기본요건(①~④)을 모두 충족하고,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을 건물 동(棟)별 일괄 매입

① (주택유형*)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정의에 따름

② (유형별 면적기준) 전용 20㎡ ~ 85㎡(호별 전용면적 85㎡이하)

③ (건령기준) '22.10.24일 기준 건물사용승인일 20년 이내*인 주택

* 건물사용승인일이 '02.10.24 이후인 주택 신청가능

④ (지하층주택) 건축물대장 상 지하층의 주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주택

- ※ (우선매입) ① 공고일 기준 지하층세대에 기존임차인이 있는 주택
- ② 대지면적이 300㎡ 이상 ③ 현 법정 주차대수 충족 주택

2 매입대상지역

① 매입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내 일부지역

* 공사 여건에 따라 대상지역 등은 변동 가능

구분	인천광역시	경기도
매입대상 지역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여주시

3 매입가격

- ① 주택매입가격(지하층도 평가)은 매입가격 한도 내에서 2개의 감정평가 법인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결정합니다.

4 매입제외주택

- ① 아래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지구 및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등 개발이 예정된 지역(지구) 내의 주택

* 다만, 개발이 예정된 지구(지역)가 지자체와 지구(구역) 지정의 해제를 합의한 경우 등 해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중 현지개발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이 확정되거나 준공된 경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 중 준치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는 신청 가능

- ② 국토교통부 공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 다만, 지하층세대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 ③ 도시가스 및 상하수도 미설치 지역의 주택

* 다만, 농어촌 등 지역여건상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이거나, 매도자가 설치하여 주거공간으로 문제가 없는 경우 신청 가능

- ④ 직선거리 500m 이내 군부대 사격장·화장장과 직선거리 50m 이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이 있는 지역의 주택

* 다만, 주유소·석유판매취급소·자동차용 천연가스충전소로부터 직선거리 25m를 초과하는 지역의 주택은 신청 가능

- ⑤ 직선거리 25m 이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 위락시설이 있는 주택

- ⑥ 불법 건축물 및 법률상 제한사유(건축법 위반, 압류 및 가압류, 경매개시, 지구단위계획상 공급 및 사용 제한 등)가 있는 주택

* 다만, 불법 및 법률상 제한사유를 치유하고 구조상의 문제가 없는 경우는 조건부 신청 가능

⑦ 맹지 상태 또는 타인 소유의 담장 등 시설물에 의해 부속토지가 점유된 주택이거나 본인 주택의 담장 등 시설물이 타인 소유의 주택의 부속토지를 침범하는 등 경계가 불확실한 주택

* 다만, 점유해소 가능한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 시 신청 가능하며, 경계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재조사 및 “지적측량성과도(매도자부담)” 제출 요청 가능

⑧ 건축허가일이 2019.11.7일 이후인 경우 외벽(필로티 구조의 외기에 면하는 천장 및 벽체를 포함) 마감재료(단열재, 마감재 등)가 준불연재 또는 불연재 성능을 만족하지 않는 주택

* 다만, 건축허가일이 2019.11.6일 이전인 경우에는 외벽단열재 또는 마감재가 준불연재 성능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만 신청 가능

⑨ 세대별 전기 및 수도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주택

* 다만, 계량기 추가설치가 가능한 경우 조건부 신청 가능

⑩ 매도신청인 본인 및 본인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가 前·現 공사 직원(임원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

* 다만, 퇴직직원(임원 포함)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5년간 상기 조항 적용

⑪ 청탁 등 부정행위로 공사로부터 제재를 받은 행위자가 소유(중개)하는 주택

⑫ 세대 내 보일러실 및 세탁기, 냉장고 및 조리공간 확보가 어려운 주택

⑬ 진입도로 미확보주택 (단, 사도 무상귀속 또는 기부채납 조건부 매도신청 가능)

⑭ 옥상출입이 불가능한 주택 (사다리를 통해 출입 가능하거나 특정세대 통과주택 등 포함)

⑮ 외벽마감재가 공사 매입제외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 타일, 파벽돌 등

⑯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 주택

⑰ 중대하자(주택균열, 지반침하, 누수, 급수 및 오배수 불량 등)가 발견된 주택

5 신청접수

① 신청기간 : 2022.10.24(월) ~ 11.02(수) 10일간

②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필요), 우편 및 현장접수

◆ 인터넷 접수 방법 (붙임 '온라인주택 매도신청방법' 참고)

- ① LH 홈페이지(www.lh.or.kr) 상단 '주택매입' 또는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인터넷 청약' 메뉴 내 '청약신청 - 주택매도신청' 클릭
- ② '주택매입공고' 화면에서 OO지역 기존주택 매입공고 확인
- ③ '주택매도 신청하기' 클릭, 항목별 입력 및 첨부서류 등록 후 매도신청서 입력

- * 소유자, 소유자의 대리인, 공인중개사 신청 가능(위임장 및 관련서류 필수제출)
- * 매도신청서류 중 붙임 공사양식은 출력·작성하시고, 기타발급서류(사진 포함) 등과 함께 PDF파일로 스캔 후 압축하여 기타 첨부란에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 서류의 확인이 어렵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원본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인터넷접수 외 방법으로 접수한 경우 접수여부를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인터넷 접수가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인터넷 사용 불가 등) 우편·현장 접수가 가능하오니, 반드시 해당 지역별 담당자와 사전에 유선상담 후 신청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 불가피한 상담 및 방문 시 상담·접수시간(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사업대상지역별 LH 담당지역본부 및 문의전화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대상지역(물건소재지)	주소	문의전화
경기도 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하남시,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	LH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논현동 254)	02-3496-4131
인천광역시(군 제외), 경기도 광명시, 시흥시, 고양시, 파주시, 부천시, 김포시	LH 인천지역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23(논현동 639-1)	032-890-5462 032-890-5437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안산시, 용인시, 군포시, 과천시, 광주시, 평택시, 의왕시, 화성시, 이천시, 오산시, 안성시, 여주시	LH 경기지역본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구미동 175)	031-250-6042 031-250-8328

③ 구비서류

구 분	내 용	비 고
공사 양식 (붙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층 주택 매도신청서 • 매입신청주택 건물·임대현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주택매도신청용) • 청렴서약서 (매도인, 대리인, 공인중개사 모두) • 공사직원 여부 확인서 	
발급 필요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대장(표제부 및 전유부분) • 건축물현황도(배치도 및 층별·호별 평면도 포함) • 토지대장(필지별) • 토지이용계획확인서(필지별) • 건물(호별), 토지(필지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터넷 : 정부24 http://www.gov.go.kr - 단지형 주택은 건축물대장에 총괄표제부 포함 제출
개인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분증(소유자) 사본 • 건물사진(전면, 측면, 후면)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소유자 인감증명서 (본인발급용),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추가 	
해당주택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허가일이 2019.11.7일 이후의 외단열 시공주택 외벽 단열재를 포함한 마감재료 전체의 시험성적서, 납품확인서, 시공사진 • (건축허가일이 2019.11.6일 이전의 외단열 시공 주택 외벽 단열재 또는 마감재의 시험성적서, 납품확인서, 시공사진 	
향후 추가제출 (주택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허가서 • 사용승인서 • 준공도면(CAD, PDF 파일) • 주요자재 및 설명서(해당주택) • 기타(인·허가 필증 등) 	매입대상주택 통보 후 계약체결전까지 제출
향후 추가제출 (직원여부 조회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공사직원여부 조회용) • 공사직원 및 직원가족여부 검증 확인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3부 	감정평가대상주택 선정 시 필수 제출 (미제출시 계약 불가하며, 집주인 계속거주는 선택사항)
향후 추가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차인 주거상향 신청서(공사양식) 1부 • 집주인 계속거주 희망 신청서(공사양식) 1부 	

* 제출서류는 매입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 필요시 상기 구비서류 외에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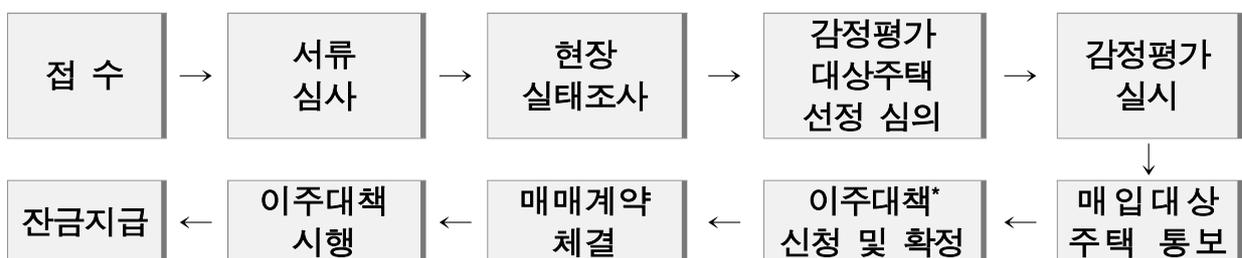
- ① 본 사업은 지하층주택 거주자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지하층주택을 매입하는 사업으로 집주인의 주거안정 지원과 지하층 세입자의 지상층 주거상향 지원을 위해 이주대책을 별도 마련하였습니다.
- ② 집주인 주거안정 및 지하층 세입자 지상층 주거상향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 첨부된 “집주인 계속거주 희망신청서”나 “임차인 주거상향 신청서”를 감정평가 결과 통보 이후 제출해야 합니다.
- ③ 지하층주택 집주인은 LH에 주택을 매도한 후 현재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길 희망할 경우 LH와 별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매입임대 임차인 자격으로 계속 거주가 가능합니다.
단, 집주인(세대구성원 포함)은 LH에 주택을 매도한 후 무주택상태 여야 하며, 임대차계약 체결 후에도 무주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④ 지하층 세입자는 집주인이 현재 주택을 LH에 매도 시 지상층 주거상향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인근 LH 지상층 매입임대주택이나 현재 주택의 지상층 공실로 이주가 가능합니다.
단, 지상층 주거상향을 받기 위해서 LH와 별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하며 임차인(세대구성원 포함)은 무주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⑤ 인근에 LH 매입임대주택이 없는 경우, LH가 제시하는 주택들이 원하는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현재 주택 지상층에 공실이 없는 경우는 지하층 세입자의 주거상향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집주인과 주택 매매계약 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7 매도 신청시 유의사항

- ① 주택 매도 신청 후 공사와 매매계약체결 전까지는 제3자와 매매계약이 가능하며 공사 심의결과 등에 따른 미 계약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② 매도신청인의 청렴서약서, 공사직원여부 확인서, 임차인 주거상황 신청서 등 필수서류 미제출 시 공사가 매입 제외할 수 있습니다.
- ③ 대상주택의 사용·수익·처분과 관련된 법률적 또는 사실적 분쟁 등이 있는 경우 접수 시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비고지 또는 허위 고지한 경우 매입제외, 계약해지 및 계약해제 될 수 있습니다.
- ④ 매도신청인 및 중개사는 LH직원에 대한 청탁 등 부정행위를 할 수 없으며,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매도신청인 및 중개사는 금회 및 향후 매도신청 주택(중개사의 경우 본인 및 본인이 속한 법인이 중개를 담당할 주택) 모두 제재확정일로부터 10년간 LH의 매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⑤ 민간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 중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우리 공사는 임대사업을 승계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해 감면세액의 추징 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으니 자세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국세청에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8 주택매입절차 안내

- ① 매입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며 일정기간이 소요됩니다.



* 이주대책을 신청한 경우 무주택 여부 검증 및 주택물색을 위한 기간이 추가 소요됨

- ② 접수된 주택은 서류심사, 현장실태조사를 거친 후, 공사 매입기준에 따라 매입심의위원회에서 감정평가 대상주택을 선정합니다.
- ③ 서류심사 결과 공사 매입제외기준에 해당할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하지 않고 매입제외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 ④ 감정평가 대상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한해 매도자의 직원(임원 및 퇴직직원 포함) 및 직인가족 여부* 검증을 실시하며, 검증을 미동이하거나 직원 및 직인가족 주택에 해당할 경우 매입하지 않습니다.

* 매도신청인 본인 및 본인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가 LH 前·現직원 해당여부

다만, 퇴직직원(임원 포함)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5년간 상기 조항 적용

9 매입대상주택 선정

- ① 신청 접수된 주택은 서류심사, 현장실태조사, 매입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사 매입기준에 부합한 주택을 선정합니다.

- 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 건물노후 정도, 주택의 관리상태
- 공부상 등재사항과 실제 사용현황 일치여부 등 주택의 상태
- 매입가격, 임대현황 및 향후 임대가능성, 관리비부담 적정성 등

- ② 주택선정심의결과는 매입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며, 심의위에서 매입불가로 확정된 주택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③ 대중교통 접근성 및 생활편의성 등 임대가능성, 매입가격, 관리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량주택순으로 매입합니다.
- ④ 우리공사 매입기준에 부적합한 주택은 LH 매입계획물량에 미달하더라도 매입하지 않습니다.

10 매매협의 및 계약체결

- ① 매매협의 기간 내 공사가 제시하는 **매입가격**(감정평가금액), **매입조건** 및 **계약관련사항** 등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 매매협의기간 내 매도희망 통보가 없는 경우 매도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② 매매협의 완료 후 계약일 이전까지 건물 및 대지에 대한 보전처분, 신탁, 제한물권 등 LH와 협의되지 아니한 채권·채무는 모두 말소해야하며, 계약체결 후에는 당해주택 및 대지에 대해 권리관계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채권·채무 설정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③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권리관계의 문제없이, 동시에 매매협의 및 계약체결이 가능해야 합니다.
- ④ 계약금은 계약체결 후(소유명의자가 신탁회사인 경우 소유권이전 후 계약금 지급) 잔금은 소유권이전등기 후 지급하되, 기존임차인 임대보증금과 공사가 인수하는 채무 및 제세공과금 등은 매매대금에서 공제합니다.
- ⑤ 매매계약은 공사의 표준 부동산매매계약서 기준으로 체결하고, 매입 부대조건은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합니다.
- ⑥ 매매계약 시 매도인은 해당 주택(오피스텔 포함)의 하자담보를 위해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을 제출**(세부기준 별도 안내)해야 합니다.
- ⑦ 매매협의 완료 후 계약일 이전까지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서류 미제출시 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⑧ 매입대상주택 통보 후에도 추가로 매입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발생할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⑨ 재매도 신청주택의 경우 신청접수일이 기 감정평가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중전평가금액으로 매입가격을 협의**합니다.

11 매매대금의 지급

- ① 매매대금은 계약금, 금융기관 용자금, 기존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잔금 및 유보금으로 구성됩니다.
- ② 매매대금은 소유자가 작성한 계좌입금의뢰서에 기초하여 지급됩니다.
- ③ 금융기관 용자금은 계약체결시 안내하는 합의서에 기초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후 지급 가능합니다.
- ④ 잔금은 매도자의 계약조건 이행여부와 LH가 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주택상태를 최종 확인 후 지급합니다.
- ⑤ 잔금지급 이전에 매입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등 기지급된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⑥ 유보금은 미정산 공과금 및 계약특약사항 이행 등을 위해 일정금액을 유보하는 금액으로 정산 및 이행확인 후 최종 지급합니다.
- ⑦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국가재정이 투입됨에 따라 계약체결 후 지체없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하며,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과세 시점은 소유권 이전등기일 입니다.

12 기존(지상층)임차인 및 주택소유자 협조사항

- ① 현장실태조사 및 감정평가 등을 위한 공사 직원,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업자의 해당 주택 방문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② 실태조사 및 감정평가 등을 위해 최소 2회 이상 현장방문(각 세대 방문)하며 매도신청인은 관계인의 방문을 수분양자 및 세입자에 미리 고지하고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미개방으로 조사 및 감정평가 불가 시 매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③ 공공임대주택 활용 목적을 감안 기존임차인의 임대차 잔여기간에 따라 공사의 실태조사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④ 기존임차인이 있는 경우 매매계약 시 매도신청인은 기존임차인에게 LH로 소유권이 변경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고지하여야 하며, 기존임차인의 서면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⑤ 매도신청인은 매도 신청 이후 소유권 이전登記 시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전등기와 무관하게 잔금수령까지 목적물에 대한 위험을 부담합니다.
- ⑥ LH는 매입대상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해 매도신청인 부담으로 잔금지급전까지 CCTV(시설물 포함), 도로명 주소, 단독경보형감지기(각 세대 모든 방·거실), 소화기(각 세대별, 계단 층별), 자동 확산소화기(보일러 상부), 분말 자동소화장치(1층 공용현관 필로티 상부, 쓰레기분리수거대 상부)를 설치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규격 개별 안내)
- ⑦ LH는 인접토지경계가 불명확하여 분쟁우려가 있는 주택은 필요시 경계복원측량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도신청인 부담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⑧ 감정평가 당시에 주택에 설치된 시설물(시스템에어컨 등)은 부합물로서 감정평가금액에 포함되므로 반출·철거할 수 없습니다.

13 공인중개사 유의사항

- ① 매도신청인은 공인중개사에 매도 신청접수를 위임할 수 있으나, 공인중개사가 매도신청인의 위임 없이 직접 신청할 수 없습니다.
- ② 공인중개사는 매도신청 이후에는 공사측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공사에서 지급받으며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③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입 신청 단계부터 잔금 지급시까지 당해 중개

대상물의 상태·입지·권리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성실·정확하게 확인하여 고지해야 합니다.

④ 매매계약체결과 부동산 실거래신고까지 적극적이고 일관성 있는 중개활동을 통해 중개 완료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잔금 지급 후 중개보수를 지급합니다.

⑤ 공인중개사는 매도 신청시 대리인란에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를 명기해야 하며, 추후 계약체결 시 적법한 대리 및 중개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매도 신청시 중개사 신청이 함께 접수되지 않은 건은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으며, 접수 후 공인중개사 변경은 불가합니다.

* (중개자격 확인서류) 개인 대리인 신분증 사본, 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일 경우 지자체에 신고한 고용 (해고) 신고 처리결과 공문 사본 등

⑤ 동일물건이 2인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중복 접수된 경우 먼저 접수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합니다.

⑥ 중개보수는 거래건별·접수단위별로 법정수수료 범위 내에서 지역 본부별 기준에 따라 지급하며, 중개사 본인의 주택(공동명의 포함)을 매매할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⑦ 중개보수 수수료 상한액은 지역본부별 기준에 따라 제한 가능하며, 개별 호가 아닌 접수 및 합계단위에 적용됩니다.

매입 클린콜 안내

- ◆ 우리 공사는 주택 매입과 관련하여 청탁 등 부정한 행위를 근절하고자 국민 여러분의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 ◆ 공사 홈페이지(국민신고 → 부패·부조리 신고 → 부조리·갑질) 또는 신고전화(☎ 055-922-5637~5641)를 통해 무기명 신고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2. 10. 05.



기존주택매입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개인정보보호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등을 근거로 아래 정보를 수집, 이용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공 항목

고유식별정보	개인정보 수집항목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 의해서만 수집 가능하며, 법령에 의한 수집 시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수집, 저장, 이용, 파기 등)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신청일로부터 **1년 (계약자는 영구)**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필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등에 따라, **본인 확인, 고지사항 전달, 매매계약을 위한 절차 진행, 매매계약 체결 및 이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 관련 법률 의무사항 이행 등을 수집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위의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리 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등에 따라, **주택매매 관련 정보제공, 홍보(SMS, 전화 등) 등을 수집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위의 [선택]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선택정보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주택 매매신청에는 제한이 없으나, 해당 정보를 통한 서비스 안내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동의한 경우라도 정보주체 본인이 수집목적 사용을 위한 [선택] 개인정보에 대해 삭제의사 표시 시 수집된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즉시 파기 처리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여부

[필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등에 따라, **매매계약을 위한 절차진행, 매매계약 체결 및 이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 관련 법률 의무사항 이행**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매입업무 관련 감정평가업자, 법무사, 위탁 관리 업체)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 위의 [필수]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리 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20 . . .

성 명(법인명) : (인)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휴 대 전 화 번 호 :

청렴서약서

본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상호 청렴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해 공사의 기존(약정)주택 매입공고에 따른 주택매도 신청에 있어 아래와 같이 “청탁 등 부정행위” 등을 하지 않겠습니다.

본인(또는 대리인)은 제3자의 우월적 지위 또는 인적 관계를 활용하여 청탁(청탁시도 포함) 등 공사의 주택매입 과정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각종 부정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금회 매도 신청주택은 즉시 심사배제 및 계약 해제 되고, 향후 본인(또는 현재 본인이 속한 법인)이 매도(또는 중개)할 주택까지 제재확정일로부터 10년간 LH의 매입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 하고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생년월일 :

서약자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양식 5]

위임장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신주소 병기)			
대지면적	m^2	연면적	m^2

위임자

- 성 명(법인명) : _____ (인)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_____
- 주 소 : _____

수임자

- 성 명 : _____ (인)
- 주민등록 번호 : _____
- 주 소 : _____

위 위임자는 상기 부동산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함에 있어
위임자의 모든 권한 일체를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20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내 지하층주택 매입사업 임차인 주거상향 신청서(기축매입)

※ 지하층주택 거주 임차세대별 작성

안 내 사 항

본 사업은 지하층주택을 매입하여 지상층은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지하층은 커뮤니티시설(주민공동시설 등)로 시설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매도신청인은 사업 참여 시 **지하층세대 거주임차인에게 다음의 사실을 안내 후 주거상향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input type="checkbox"/> 주택소재지	
<input type="checkbox"/> 매도인	
<input type="checkbox"/> 임차인	(연락처)

※ 주거상향이란? LH 지하층주택 매입사업으로 매도인이 주택 매각 시, 지하층주택 거주 기존 임차인은 **당연 퇴거**하고 **다음의 요건(①, ②)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이주지원** 합니다.

- ① **현재 거주중인 주택의 지상층 세대 중 공실 세대로 입주희망** (이주, 미이주)
* 단, 공실이 없거나 주택하자에 따른 지상층 세대 수선 필요시 입주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② **해당주택 인근지역의 LH 매입임대로 입주희망** (이주, 미이주)
* 단, 인근지역에 LH 매입임대주택 공실이 없거나 희망사항을 충족하는 주택이 없을 경우 입주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희망지역(인근)	시	동	세대구성원 무주택 여부	<input type="checkbox"/> 유주택, <input type="checkbox"/> 무주택
현재 가구원수		명	희망 방 개수	

상기 매도인은 임차인에게 해당사실을 안내하였음을 확인하며 임차인은 매도인의 LH 지하층주택 매입사업 참여를 위한 주거상향 신청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매도인 : (인)

임차인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